



제 438회 국회 (임시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해사노동협약에 부합하는 선원 근로·보호 기준 정비 등〉
■ 주철현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19049호

2026. 8.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문위원 윤성민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1. 해사노동협약에 부합하는 선원 근로·보호 기준 정비	3
2. 선원 적성검사에 관한 업무 삭제	12
3. 선원관리 신고·수리 업무의 하위규정 위임근거 정비	16
4.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임원 선임방법 변경	20
5. 자료제공의 요청 및 정보시스템 등의 이용 조문 신설	25
IV . 입법의 재정영향	34
V . 참고자료	35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주철현의원 등 11인
2. 제 안 일 : 2026. 5. 22.
3. 회 부 일 : 2026. 5. 26.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선원의 직무, 복무, 근로조건의 기준, 직업안정, 복지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선내 질서를 유지하고, 선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향상시키며 선원의 자질 향상을 도모하고 있음.

한편, 국제노동기구(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이하 “ILO”라 함)의 해사노동협약(Maritime Labour Convention, 이하 “MLC”라 함)은 선원의 근로조건과 권익 보호 등에 관한 국제협약으로, 대한민국은 해당 협약의 비준국으로서 「선원법」에 협약 내용을 충실히 반영할 필요가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MLC에서 허용하지 않는 실습선원의 근무시간 예외 규정(안 제61조의2)과 미성년 선원의 야간작업 제한 예외 규정(안 제91조, 제92조) 등을 두고 있어, 국제협약 기준에 맞도록 이를 정비하고 선원의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 및 권익 보호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현행 제도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해

관련 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안 제112조, 제159조의2), 사문화된 조항을 삭제하며(안 제108조), 타 법령 및 규정과의 정합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련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144조 등).

Ⅲ. 검토의견

1. 해사노동협약에 부합하는 선원 근로·보호 기준 정비

가. 개정안의 요지

□ 개정안은 현행법이 국제노동기구(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이하 “ILO”라 함)의 해사노동협약(Maritime Labour Convention, 이하 “MLC”라 함)과 불일치하는 부분을 개정하려는 것임 (안 제61조의2제1항, 제62조제4항, 제91조제1항, 제92조제1항).

[표]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61조의2(실습선원의 실습시간 및 휴식시간 등) ① 실습시간은 1일 8시간, 1주간 40시간 이내로 한다. 다만, 항해당직훈련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u>1주간에 16시간</u>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제61조의2(실습선원의 실습시간 및 휴식시간 등) ① ----- ----- --. ----- ----- <u>1일 6시간</u> 이내, <u>1주간에 총</u> -----.
② ~ ④ (생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62조(시간외근로수당 등) ① ~ ③ (생략)	제62조(시간외근로수당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u>선원은 선박소유자 또는 선장에게 본인의 기록이 적혀 있는 제3항에 따른 서류의 사본을 요청할 수 있다.</u>	④ <u>선박소유자 또는 선장은 선원에게 그 선원</u> ----- ----- <u>제공</u> <u>하여야 한다.</u>

⑤ (생 략) 제91조(사용제한) ① 선박소유자는 16세 미만인 사람을 선원으로 사용하지 못한다. <u>다만, 그 가족만 승무하는 선박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u> ② ~ ⑦ (생 략) 제92조(야간작업의 금지) ① 선박소유자는 18세 미만의 선원을 자정부터 오전 5시까지를 포함하는 최소 9시간 동안은 작업에 종사시키지 못한다. <u>다만, 가벼운 일로서 그 선원의 동의와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u> ②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91조(사용제한) ① ----- ----- ----- . <단서 삭제> ② ~ ⑦ (현행과 같음) 제92조(야간작업의 금지) ① ----- ----- ----- ----- . <단서 삭제> ② (현행과 같음)
---	---

나. 검토의견

□ MLC는 1920년부터 채택한 최저연령 및 근로시간 등에 관한 39개 협약과 29개의 권고를 통합하여 단일 협약으로 만든 것으로, 우리나라는 MLC의 내용을 국내법인 「선원법」에 수용하여 이를 이행하고 있음.

현행법은 MLC의 주요 내용을 상당 부분 반영하고 있으나, ①실습선원의 항해당직훈련 실습시간, ②선원의 근로시간 기록 제공, ③16세 미만 선원의 사용 금지, ④18세 미만 선원의 야간작업 제한과 관련하여 MLC의 세부 기준¹⁾과 일부 차이가 있음.

□ (실습선원의 항해당직훈련 실습시간) 현행법 제61조의²⁾는 실습선원³⁾의 실습시간을 1일 8시간, 1주간 40시간 이내로 하되, 항해당직훈련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1주간 16시간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1) 개정안 관련 MLC 규정은 [참고 1] 참조

2) 「선원법」

제61조의2(실습선원의 실습시간 및 휴식시간 등) ① 실습시간은 1일 8시간, 1주간 40시간 이내로 한다. 다만, 항해당직훈련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1주간에 16시간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② 선박소유자는 제1항에 따른 실습시간을 제외한 모든 시간을 휴식시간으로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임의의 24시간 중 한 차례의 휴식시간은 8시간 이상 연속되어야 한다.

③ 선박소유자는 실습선원에게 1주간에 최소 1일 이상의 휴일을 주어야 한다.

④ 선박소유자는 실습선원에게 인명, 선박 또는 화물의 안전을 도모하거나, 해양오염 또는 해상보안을 확보하거나, 인명 또는 다른 선박을 구조하기 위하여 긴급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실습시간을 초과하는 훈련 또는 작업을 명하거나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훈련 또는 작업을 하게 할 수 있다.

3) 「선원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3. “실습선원”이란 「선박직원법」 제2조제4호의2의 해기사 실습생을 포함하여 선원이 될 목적으로 선박에 승선하여 실습하는 사람을 말한다.

MLC 기준 A2.3 제5항⁴⁾은 최대근로시간이 임의의 24시간 중 14시간 및 임의의 7일 중 72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최소휴식시간이 임의의 24시간 중 10시간 및 임의의 7일 중 77시간을 하회하지 않도록 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현행법은 항해당직훈련 목적의 연장 실습에 대해 주간 한도만 두고 1일 한도를 두고 있지 않아 특정일에 실습시간이 과도하게 집중되어 협약에 위배될 가능성이 있음.

개정안은 항해당직훈련 목적의 연장 실습을 “1일 6시간 이내, 1주간에 총 16시간 이내”로 제한하여 실습선원의 1일 실습시간이 협약상 최대근로시간 기준(임의의 24시간의 기간 중 14시간)에 부합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이를 통하여 항해당직훈련 과정에서 실습선원의 휴식권과 안전한 실습환경이 보장될 것으로 기대됨.

참고로, 현행법⁵⁾은 실습선원이 아닌 일반 선원의 근로시간 및 휴

4) MLC 기준 A2.3 제5항

5. 근로 또는 휴식 시간의 제한은 다음과 같다.

가. 최대근로시간은 다음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 1) 임의의 24시간의 기간 중 14시간, 그리고
- 2) 임의의 7일의 기간 중 72시간, 또는

나. 최소휴식시간은 다음을 하회해서는 아니 된다.

- 1) 임의의 24시간의 기간 중 10시간, 그리고
- 2) 임의의 7일의 기간 중 77시간

5) 「선원법」

제60조(근로시간 및 휴식시간) ①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간 40시간으로 한다. 다만, 선박소유자와 선원 간에 합의하여 1주간 16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이하 “시간외근로”라 한다)할 수 있다.

② 선박소유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항해당직근무를 하는 선원에게 1주간에 16시간의 범위에서, 그 밖의 선원에게는 1주간에 4시간의 범위에서 시간외근로를 명할 수 있다.

③ 선박소유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선원에게 임의의 24시간에 10시간 이상의 휴식

식시간에 대해서는 선원에게 임의의 24시간에 10시간 이상의 휴식시간과 임의의 1주간에 77시간 이상의 휴식시간을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여, MLC를 준수하고 있음.

□ (선원의 근로시간 기록 제공) 현행법 제62조제4항⁶⁾은 선박소유자에게 선원의 1일 근로시간, 휴식시간 및 시간외근로를 기록할 서류를 선박에 갖추어 두게 하고 선장에게 근로시간, 휴식시간, 시간외근로 및 그 수당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적게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선원은 선박소유자 또는 선장에게 그 서류의 사본을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위 내용은 MLC 발효에 따라 기준 A2.3 제12항⁷⁾을 반영하기 위해 「선원법」에 새롭게 추가된 내용이나,

MLC는 선원이 선장 또는 그 위임자와 해당 선원이 서명한 자신의 기록 사본 1부를 수령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현행법과 같

시간과 임의의 1주간에 77시간 이상의 휴식시간을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임의의 24시간에 대한 10시간 이상의 휴식시간은 한 차례만 분할할 수 있으며, 분할된 휴식시간 중 하나는 최소 6시간 이상 연속되어야 하고 연속적인 휴식시간 사이의 간격은 14시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6) 「선원법」

제62조(시간외근로수당 등) ② 선박소유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단체협약, 취업규칙 또는 선원 근로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종(船種), 선박의 크기, 항해 구역에 따른 근로의 정도·실적 등을 고려하여 일정액을 시간외근로수당으로 지급하는 제도를 마련할 수 있다.

③ 선박소유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원의 1일 근로시간, 휴식시간 및 시간외근로를 기록할 서류를 선박에 갖추어 두고 선장에게 근로시간, 휴식시간, 시간외근로 및 그 수당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적도록 하여야 한다.

7) MLC 기준 A2.3 제12항

12. 각 회원국은 이 기준 제5항부터 제11항까지 적합한지를 감시하기 위하여 선원의 일일 근로시간 또는 휴식시간에 관한 기록을 유지하도록 요구한다. 그 기록은 국제노동기구의 모든 이용 가능한 지침을 고려하여 권한당국이 작성한 표준화된 양식 또는 국제노동기구가 준비한 일체의 표준 양식으로 한다. 기록은 이 기준 제11항에서 요구하는 언어들로 한다. 선원은 선장이나 선장이 위임한 자 그리고 해당 선원이 서명한 자신에 관한 기록 사본 1부를 수령한다.

이 선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만 사본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협약상 기록 사본 제공 의무와 차이가 있음.

개정안은 선박소유자 또는 선장이 선원에게 해당 서류의 사본을 제공하도록 하여 선원의 근로시간 기록 확인권을 명확히 보장하려는 것으로, 선원의 근로시간 관리 및 권리구제의 실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 (16세 미만 선원의 사용 금지) 현행법 제91조제1항⁸⁾은 선박소유자가 16세 미만인 사람을 선원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면서도, 그 가족만 승무하는 선박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이를 허용하고 있는데,

MLC 기준 A1.1 제1항⁹⁾은 16세 미만인 사람을 선내에 고용하거나 종사시키거나 근로하게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어떠한 예외도 두고 있지 않음.

개정안은 현행법 제91조제1항 단서를 삭제하여 MIC 기준에 맞추어 예외 없이 16세 미만인 사람을 선원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것임.

8) 「선원법」

제91조(사용제한) ① 선박소유자는 16세 미만인 사람을 선원으로 사용하지 못한다. 다만, 그 가족만 승무하는 선박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9) MLC 기준 A1.1 제1항

1. 16세 미만인 모든 사람을 선내에서 고용하거나 종사시키거나 근로를 하게 하는 것은 금지된다.

□ (18세 미만 선원의 야간작업 제한) 현행법 제92조제1항¹⁰⁾은 선박소유자가 18세 미만의 선원을 자정부터 오전 5시까지를 포함하는 최소 9시간 동안 작업에 종사시키지 못하도록 하면서도, 가벼운 일로서 그 선원의 동의와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야간작업을 허용하고 있는데,

MLC 기준 A1.1 제2항¹¹⁾은 18세 미만 선원의 야간근로를 금지하고 같은 조 제3항¹²⁾은 예외사유를 ① 설정된 훈련프로그램에 따른 효과적인 훈련에 악영향을 미치는 경우 또는 ② 업무의 구체적 특성이나 승인된 훈련프로그램상 야간 업무가 필요한 경우 등으로 한정하고 있어,

현행법의 ‘가벼운 일, 선원 동의, 장관 승인’이라는 예외 사유는 협약상 허용되는 예외 범위와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음.

개정안은 예외를 규정한 제92조제1항 단서를 삭제하여 협약과

10) 「선원법」

제92조(야간작업의 금지) ① 선박소유자는 18세 미만의 선원을 자정부터 오전 5시까지를 포함하는 최소 9시간 동안은 작업에 종사시키지 못한다. 다만, 가벼운 일로서 그 선원의 동의와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1) MLC 기준 A1.1 제2항

2. 18세 미만인 선원의 야간근로는 금지된다. 이 기준의 목적상 "야간"은 국내법과 관행에 의해 정의된다. 야간은 자정 이전에 시작하여 익일 오전 5시 이후에 종료하는 최소한 9시간의 기간이 포함된다.

12) MLC 기준 A1.1 제3항

3. 권한당국은 다음의 경우에 야간근로의 제한을 엄격하게 준수하는 것에 대한 예외를 허용할 수 있다.

가. 설정된 프로그램 및 계획에 따른 관련 선원에 대한 효과적인 훈련에 악영향을 미칠 경우, 또는

나. 업무의 구체적 특성 또는 승인된 훈련프로그램이 예외가 적용되는 선원으로 하여금 야간에 업무를 수행할 것을 요구하고, 권한당국이 관련 선박소유자 및 선원 단체와 협의 후, 해당 작업이 그들의 건강 또는 안녕에 해로운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정한 경우

불일치하는 부분을 개정하려는 취지임.

참고로, 법 제92조제1항 단서에 따른 승인 건수는 최근 5년간 0건으로, 개정안대로 해당 단서를 삭제하더라도 실제 선박 운항 또는 선원 사용 관행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임.

□ 안 제92조제1항과 관련하여, 현행법 제92조제2항¹³⁾ 역시 MLC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추가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임.

현행법 제92조제2항은 ①제60조제6항¹⁴⁾에 따른 작업에 종사시키는 경우와 ②그 가족만 승무하는 선박에 대해서는 18세 미만 선원의 야간작업 금지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음.

① 법 제 60조제6항에 따른 작업은 인명·선박·화물의 안전 확보, 해양오염 방지 또는 해상 구조 등을 위한 긴급작업이라는 점에서 MLC 기준 A1.1 제3항에서 규정한 “업무의 구체적 특성상 야간에 업무를 수행할 것이 요구되는 작업”으로 해석할 수는 있겠으나,

MLC는 이러한 업무에 대해서도 권한당국이 관련 선박소유자 및 선원 단체와 협의하고 해당 작업이 18세 미만 선원의 건강 또는 안

13) 「선원법」

제92조(야간작업의 금지) ② 제60조제6항에 따른 작업에 종사시키는 경우나 가족만 승무하는 선박에 대하여는 제1항 본문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4) 「선원법」

제60조(근로시간 및 휴식시간) ⑥ 선박소유자는 인명, 선박 또는 화물의 안전을 도모하거나, 해양 오염 또는 해상보안을 확보하거나, 인명이나 다른 선박을 구조하기 위하여 긴급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선원에게 시간외근로를 명하거나 제3항에 따른 휴식시간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작업을 하게 할 수 있다.

녕에 해로운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현행법 제92조제2항은 제60조제6항에 따른 작업에 종사시키는 경우에는 별도의 협의 절차나 건강·안녕에 대한 영향 판단 없이 18세 미만 선원의 야간작업 금지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어 MLC 기준에 위배될 소지가 있음.

② 가족만 승무하는 선박에 대하여 18세 미만 선원의 야간작업 금지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한 부분은 MLC 기준 A1.1 제3항에서 정한 예외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이상의 내용을 고려할 때, 개정안이 법 제92조제1항 단서를 삭제하여 18세 미만 선원의 야간작업 제한을 MLC 기준에 맞추려는 취지라면, 법 제92조제2항 또한 예외 규정을 그대로 두는 것이 개정 취지에 부합하는지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임.

□ 해양수산부는 국제노동기구 해사노동협약과의 정합성을 높이고 선원 근로 조건 개선을 위한 개정 취지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제시함.

2. 선원 적성검사에 관한 업무 삭제

가. 개정안의 요지

- 개정안은 법 제108조에서 명시한 해양수산부장관의 업무 중 ‘선원의 적성검사에 관한 업무’를 삭제하려는 것임(제108조제1항제4호 삭제).

[표]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08조(선원의 인력확보 및 직업안정업무)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필요한 선원인력을 확보하고 선원의 직업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 3. (생략) <u>4. 선원의 적성검사에 관한 업무</u> ② (생략)	제108조(선원의 인력확보 및 직업안정업무) ① ----- ----- ----- -----. 1. ~ 3. (현행과 같음) <u><삭제></u> ② (현행과 같음)

나. 검토의견

□ 현행법 제108조¹⁵⁾는 선원인력을 확보하고 선원의 직업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선원의 적성검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선원의 적성검사는 1984년 9월 도입 이후 현재까지 미이행된 제도이고 검사의 구체적 개념, 방법, 평가 기준 및 사후 활용방안 등이 법령상 또는 실무상 정립되어 있지 않음.

□ 개정안은 장기간 시행되지 않은 선원 적성검사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으로, 규정 존치의 필요성과 그에 따른 제도적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그 타당성을 판단할 필요가 있음.

법률상 규정이 장기간 시행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해당 규정을 삭제할 필요성이 당연히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려움. 현재 선원 적성검사가 시행되지 않음으로써 별도의 행정적·경제적 부담이나 법 적용상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지 않다면, 향후 선원 인력의 수급 여건이나 직무 특성 등의 변화에 따라 적성검사의 필요성이 제기될 가능성까지 고려하여 그 법적 근거를 유지할 필요가 있는지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음.

15) 「선원법」

제108조(선원의 인력확보 및 직업안정업무)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필요한 선원인력을 확보하고 선원의 직업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선원의 효과적인 취업 알선·모집 및 지원에 관한 업무
2. 선원인력 수요·공급의 실태 파악을 위한 선원의 등록과 실업 대책에 관한 업무
- 2의2. 소득 증대 등 선원의 처우 개선에 관한 업무
3. 제112조에 따른 선원관리사업에 대한 지도·감독에 관한 업무
4. **선원의 적성검사에 관한 업무**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국제노동기구 등 관련 국제기구·단체 및 그 회원국과의 협력과 관련된 업무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반면, 현행 규정은 적성검사의 대상·방법·기준 및 결과의 활용 등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두고 있지 않아 실제 제도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법령 정비가 필요한 상황이라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현 시점에서 선원 적성검사를 시행할 구체적인 정책적 필요성이 확인되지 않고 제도의 구체적인 운영방안도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면 해당 규정을 삭제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향후 선원 인력정책의 변화 등에 따라 적성검사 제도의 필요성이 발생할 가능성도 함께 고려하여 삭제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어 보임.

□ 해양수산부는 동 제도가 도입('84.9월) 후 지금까지 미이행된 제도이며 관련 업단체 및 이해관계자 등의 존치 불필요 의견¹⁶⁾ 등을 감안할 때 동 제도의 폐지는 적절하며,

장기간 시행되지 않아 사문화된 제도가 법률에 존치될 경우 선원 또는 선원이 되려는 자, 선박소유자 등 「선원법」 적용 대상에 혼란을 야기할 수 있으며, 법적 안정성·예측가능성·신뢰도가 저하될 수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함.

참고로, 과거 「대외무역법」은 사문화되어 있는 국외 취업자 모집에 대한 노동부장관의 동의 규정을 삭제하기 위해 개정된 바 있음.

16)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 및 선원직 진입장벽으로 작용 우려, 적성검사 기준 마련에 현실적 어려움 등(선원노련, 해운협회 등 11개 유관기관 대상 '선원 적성검사' 제도의 존치 필요성 의견조회, '25.8월)

대외무역법(법률 제10231호, 2010.4.5. 개정, 2010.10.6. 시행)

◇대외무역법 개정이유

국내 항만이나 공항 이용의 편의를 높이기 위하여 전락물자 등의 경유·환적 허가대상을 대통령령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위임근거를 마련하고, 최근 플랜트수출의 수출환경 변화를 반영하기 위하여 ‘산업설비수출’이라는 용어를 ‘플랜트수출’로 변경하며, **사실상 사문화되어 있는 국외 취업자 모집에 대한 노동부장관의 동의 규정을 삭제**하고, 정부의 플랜트수출 촉진 정책에 관한 근거를 규정하는 한편, 수입물품을 단순 가공처리한 자에 대해서도 당초의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수입물품에 대한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원산지 표시 의무 위반자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선원관리 신고·수리 업무의 하위규정 위임근거 정비

가. 개정안의 요지

- 개정안은 선원관리사업 신고 및 신고 수리에 관한 규정인 법 제 112조제4항 및 제5항에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라는 문구를 추가하여 신고 및 신고 수리의 세부 절차와 기준을 하위규정에 위임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12조).

[표]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12조(선원관리사업) ① ~ ③ (생략)	제112조(선원관리사업)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선원관리사업자는 선원관리업무를 위탁받거나 그 내용에 변경이 있을 때에는 <u>해양항만관청</u> 에 신고하여야 한다.	④ ----- ----- ----- <u>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항만관청</u> -----.
⑤ 해양항만관청은 제4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u>적합하면</u>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⑤ ----- ----- ----- <u>적합하면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u> -----.
⑥ ~ ⑪ (생략)	⑥ ~ ⑪ (현행과 같음)

나. 검토의견

□ 현행법¹⁷⁾은 선원관리사업자가 선원관리업무를 위탁받거나 그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신고하도록 하고, 해양항만관청이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그 세부 절차 및 기준은 해양수산부 고시인 「선박관리업의 등록관리요령」(이하 “관리요령”이라 함)¹⁸⁾에서 규정하고 있음.

17) 「선원법」

제112조(선원관리사업) ④ 선원관리사업자는 선원관리업무를 위탁받거나 그 내용에 변경이 있을 때에는 해양항만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⑤ 해양항만관청은 제4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18) 「선박관리업의 등록관리요령」

제19조(선원관리 등 신고서 제출) 사업자가 선박소유자 등과 선박관리계약을 체결하여 한국선원을 관리하려면 별지 제7호서식의 관리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공증인의 공증을 받은(공증을 받은 후 5개월 이내의 것을 말한다) 선박관리계약서 사본(기존 선박소유자 등인 경우에는 계약의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그 밖의 서류로 갈음할 수 있다)
2. 공증인의 공증을 받은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사본
3. 선박국적을 증명하는 서류(외국적선박에 한정한다)
4. 삭제
5. 삭제
6. 협회 및 해외취업노사협의회 등의 의견서(해외취업노사협의회 등의 의견서는 외국적상선에 한정한다)
7. 3개월 이상 선원임금 체불 시 선박소유자 등과 연대하여 임금지불을 보증하는 내용으로 공증을 받은 서류. 다만, 제18조의2에 따라 취업규칙을 작성한 경우에는 보증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8. 선원의 재해보상을 완전히 이행할 수 있도록 「선원법 시행령」 제32조 각 호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관계서류

제20조(선원관리 등 신고 수리제한) 선원관리 등 신고서를 제출 받은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신고 내용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선원관리 등 신고를 수리해서는 안 된다.

1. 신청내용이 이 요령에 위배되거나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
2. 신청 외국적선박의 선령(船齡)이 20년(어선의 경우 25년을 말한다)을 초과하는 경우. 다만, 우리나라 선원이 계속 승선중인 선박 또는 국제선급연합회 정회원인 선급에 등록하여 선박검사를 받고, 검사에 합격한 선박은 제외한다.
3. 해양수산부장관이 국적선박의 선원 수요·공급 목적상 또는 해운 및 수산업 발전을 위하여 선원해외취업을 제한한 경우
4. 선원임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한 경력이 있는 선박소유자 등의 선박인 경우
5. 선박관리계약을 체결한 선박소유자 등의 선원임금체불 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사업자가 신청한 경우
6. 사업자가 제24조의 영업보증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7. 삭제
8. 삭제

제21조(선원관리 등 신고의 수리) ①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19조 각 호의 서류를 심사하여 그

법제처는 관리요령상 선원관리신고 및 신고 수리에 관한 규정이 법령의 위임을 받지 않아 위임범위를 일탈한 문제가 있음을 지적한 바 있음.

구체적으로, 관리요령상 선원관리신고는 행정청이 신고내용을 심사하여 수리 여부를 결정하는 구조이므로 「행정기본법」상 수리를 요하는 신고¹⁹⁾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수리를 요하는 신고는 신고인의 권리·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이를 고시에서 규율하려면 법률상 위임근거가 명확할 필요가 있음.

「해운법」 제33조제4항²⁰⁾은 관리요령에 대한 위임근거를 두고 있으나, 이는 선박관리업의 등록·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내용이 적합하면 선박별로 신고를 수리한다.

②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사업자가 제19조에 따라 선원관리 등의 신고를 하고 선원을 승선시키려고 「선원법 시행규칙」 제61조에 따라 선원수첩의 공인신청을 하면 제14조제3항에 따른 선원근로계약의 내용이 제14조제1항에 따른 선박관리계약의 내용과 일치하는지와 선원근로계약서에 선원이 서명, 날인을 했는지를 확인한 후 선원수첩에 공인을 해야 한다. 이 경우 해외취업선원은 해외취업노사협의회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19) 「행정기본법」

제34조(수리 여부에 따른 신고의 효력) 법령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청에 일정한 사항을 통지하여야 하는 신고로서 법률에 신고의 수리가 필요하다고 명시되어 있는 경우(행정기관의 내부 업무 처리 절차로서 수리를 규정한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행정청이 수리하여야 효력이 발생한다.

20) 「해운법」

제33조(사업의 등록) ① 해운중개업, 해운대리점업, 선박대여업 또는 선박관리업(이하 “해운중개업등”이라 한다)을 경영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해운중개업등을 경영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경영 형태를 갖추어야 한다.

③ 해운중개업등(선박대여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등록의 유효기간은 등록일부터 3년으로 하고, 계속하여 해운중개업등을 경영하려면 등록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등록을 갱신하여야 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선박관리업의 효율적인 등록·관리 및 선원의 권익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을 고시로 정하도록 규정하는 것일 뿐 선원관리신고 및 그 수리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관리요령상 선원관리신고 관련 규정이 법령의 구체적인 위임을 받은 것으로 보기 어려움.

□ 개정안은 신고 및 신고 수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해양수산부 고시인 관리요령에 위임하는 위임근거를 마련하여 법제처의 지적사항을 시정하려는 취지로 보임.

□ 해양수산부는 개정안이 현행 「선박관리업의 등록관리요령」에 따라 지방해양수산청에서 수행 중인 선원관리 신고 수리업무에 대한 위임규정을 법률에 마련하는 것이므로 수용한다는 의견을 제시함.

4.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임원 선임방법 변경

가. 개정안의 요지

- 개정안은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의 이사장을 현행 이사회 선임 후 해양수산부장관 승인 방식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직접 임면하는 방식으로 변경하는 등 임원 선임 방식을 변경하려는 것임 (안 제144조).

[표]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44조(임원) ①·② (생략)	제144조(임원)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이사장과 감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에서 선임하되,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이사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 장관이 임면하고, 비상임이사 및 비상임감사의 임면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생략)	④ (현행과 같음)

나. 검토의견

□ 현행법²¹⁾은 선원의 복지 증진과 고용 촉진 및 직업안정을 위하여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립하도록 하고, 센터에 임원으로 이사장 1명을 포함한 13명 이내의 이사와 1명의 감사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사장을 제외한 이사와 감사는 비상임으로 하고 이사장과 감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에서 선임하되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음.

□ 개정안은 이사장을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임면하고 비상임이사 및 비상임감사의 임면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센터의 임원 임면 체계를 정비하려는 것임.

센터 정관 제18조²²⁾는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이사장을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센터의 이사회는 이사장과 노측 이사 6명, 노측 외 이사(사측 및

21) 「선원법」

제142조(설립)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선원의 복지 증진과 고용 촉진 및 직업안정을 위하여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립한다.

제144조(임원) ① 센터에는 임원으로 이사장 1명을 포함한 13명 이내의 이사와 1명의 감사를 둔다.

② 이사장을 제외한 이사와 감사는 비상임으로 한다.

③ 이사장과 감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에서 선임하되,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임원의 자격, 선임, 임기, 직무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22)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정관」

제18조(이사장의 임면 및 직무) ① 이사장은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임명한다.

② 이사장은 센터를 대표하며, 센터의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③ 이사장은 재임기간동안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타 직업에 종사할 수 없다.

정부측 이사) 6명으로 구성되어 있어²³⁾, 이사장은 이사회 내 노·사 간 의견이 대립하는 경우 의사결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음.

종전과 같이 이사회가 이사장 후보자 1명을 선출하고 해양수산부 장관이 이를 승인하는 방식에서는 이사회의 구성이 이사장 선임 결과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²⁴⁾,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사회가 단수로 선출한 후보자에 대하여 승인 또는 불승인만을 결정할 수 있으므로 노·사 간 균형이나 기관 운영의 공공성을 적극적으로 고려하는 데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음.

개정안에 따라 해양수산부 장관이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

23)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정관」

제17조(이사의 임면) ① 이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하고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보고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사회에서 선임된 센터의 당연직 이사로 본다(이하 “당연직이사”라 한다).

1. 센터 이사장
2.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장
3. 기획예산처 경제예산심의관
4. 한국해운협회 상근부회장
5. 전국해상선원노동조합연맹 위원장
6. 삭제
7. 삭제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당연직이사를 제외한 이사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1. 해양수산부 장관이 추천하는 전국을 대표하는 선원의 사용자단체의 장 3인 이내
2. 전국해상선원노동조합연맹에서 추천하는 지역 또는 업종을 대표하는 단위선원노동조합의 위원장 5인 이내
3. 삭제
4. 해양수산부 장관이 추천하는 선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1인

24) 센터는 2001년 설립 이후 2019년까지 선임된 이사장 5명 중 4명이 해양수산부 공무원 출신이었으나 2019년 후임 이사장 선임 과정에서 해양수산부 공무원 출신 후보 배제를 둘러싼 이견으로 절차가 장기간 지연된 후 2020년, 2023년에는 두 차례 연속하여 전 전국해상산업노동조합연맹(현 전국선원노련) 위원장 출신 인사가 선임되었음.(연합뉴스, 「선원복지고용센터 이사장에 이중환 씨 선출」, 2020.02.06., <https://www.yna.co.kr/view/AKR20200206172300051>)

한 사람 중에서 이사장을 임명하게 되면 현행 선임방식의 한계를 보완하여 노·사 간 균형 및 기관의 공공성 등을 고려하여 이사장을 선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센터는 공공기관은 아니지만 법률에 따라 설립되어 선원복지시설의 설치·운영, 국내외 선원의 취업 동향과 고용 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 및 국가로부터 위탁받은 선원 직업안정업무 등 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2026년 예산의 약 96%²⁵⁾를 국비로 지원받고 있다는 점에서,

국립해양박물관²⁶⁾·국립해양생물자원관²⁷⁾ 등 공공기관의 장을 해양수산부 장관이 임명하도록 한 입법례와 유사하게 센터 이사장의 임면권자를 규정하는 것은 적절한 것으로 보임.

- 개정안에 따라 법률상으로는 감사 선임에 대한 해양수산부 장관의 승인 문구가 삭제되나, 현행 정관²⁸⁾은 감사를 이사회에서 선

25) 2026년 예산 83.68억원 중 국비 80.32억원(96%), 자체수입 3.4억원(4%)

26) 「국립해양박물관 등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임원) ① 박물관에는 임원으로서 관장 1명, 상임이사 1명, 5명 이내의 비상임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

② 감사는 비상임으로 한다.

③ 관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 장관이 임명하고,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 및 감사의 임면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7)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임원) ① 자원관에는 임원으로서 관장 1명, 상임이사 1명, 5명 이내의 비상임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

② 감사는 비상임으로 한다.

③ 관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 장관이 임명하고,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 및 감사의 임면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8)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정관」

제19조(감사의 임면) ①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하여 해양수산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감사는 센터의 재산상황과 업무집행상황을 감사하여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사회와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고,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개정안에 의해 감사 선임에 대한 해양수산부의 통제가 약화될 우려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임.

- 참고로, 센터는 이사회를 개최하여 이사장 선임방법을 임원추천 위원회의 복수 추천 및 해양수산부장관 임명 방식으로 변경하는 정관 개정안을 의결²⁹⁾하였고, 동 정관은 '26년 2월 개정되었음.

정관 개정이 이사회 의결³⁰⁾을 거쳐 이루어졌으며 정관 개정 및 동 개정안 발의 과정에서 선원노련 및 노동조합이 별도의 의견을 제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므로, 이사장 선임방식 변경에 대해 이해관계자 사이에 특별한 이견은 없는 것으로 보임.³¹⁾

- 해양수산부는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는 예산의 약 96%를 국비 지원받은 기관으로 정부의 견제 수단 확보 및 기관 공공성 제고를 위해 개정안을 수용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③ 삭제

제30조(정관의 변경) 센터가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29)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정관」

제26조(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1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30)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정관」

제27조(의결방법)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

31) 참고로, 2019년 이사장 선임 과정에서 해양수산부와 전국해상선원노동조합연맹(선원노련)이 정부 측 후보와 노조 측 후보를 서로 수용하지 않으면서 이사장 선임이 장기간 지연된 바 있음(국제신문, 「선원복지센터 이사장 선거 합의...내용 불합치나」, 2019.12.30.,

<https://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0200&key=20191231.22015014342>).

5. 자료제공의 요청 및 정보시스템 등의 이용 조문 신설

가. 개정안의 요지

- 개정안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선원의 근로조건 보호, 재해보상 확인, 선내 안전보건 기준 확인 및 출입항 신고 시 승선원 명부 확인 등을 위하여 관계 기관·단체 등에 선원 또는 선박에 관한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항만물류통합정보체계를 연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59조의2 신설).

[표]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59조의2(자료제공의 요청 및 정보시스템 등의 이용)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법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의 보호, 재해보상의 확인, 선내 안전보건 기준의 확인,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입항 신고시 승선원 명부 확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선원 또는 선박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 제공

의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1.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2. 지방자치단체의 장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4. 「수산업협동조합법」 제4조에 따른 조합장 및 중앙회장

5. 「한국해운조합법」 제4조에 따른 조합 회장

6. 한국해운협회 등 그 밖에 관련 되는 기관·단체의 장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항만법」 제26조에 따른 항만물류통합정보체계를 연계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나 취득한 정보를 이 법에서 정하는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검토의견

- 개정안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선원의 근로조건 보호, 재해보상 이행 여부 확인, 선내안전보건기준 준수 여부 확인 및 출입항 신고 시 승선원 명부 확인 등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관계 기관·단체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선원 관련 정보는 여러 기관·단체에 분산되어 있어 해양수산부장관이 이를 신속하게 확인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음. 개정안은 이러한 자료제공 요청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선원 보호 행정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취지로 보임.

개정안을 통해 선원근로감독 및 선원 권익보호 업무의 신속성과 정확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 개정안과 관련하여, 다음의 사항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첫째, 보험 또는 공제 운영자를 자료제공 요청 대상에 추가할 필요가 있음.

현행법 제106조³²⁾는 선박소유자가 해당 선박에 승무하는 모든

32) 「선원법」

제106조(재해보상보험 등의 가입 등) ①선박소유자는 해당 선박에 승무하는 모든 선원에 대하여 재해보상을 완전히 이행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 또는 공제(이하 “재해보상보험 등”이라 한다)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선박소유자는 재해보상보험등에 가입할 경우 보험가입 금액은 승선평균임금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③ 재해보상보험등에 가입하는 선박소유자는 선원이 재해보상보험등을 운영하는 사업자(이하 “재해보험사업자등”이라 한다)에게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있도록 선원을 피보험자로 지정하

선원에 대하여 재해보상을 완전히 이행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도록 하고, 재해보험사업자등이 선원·유족 또는 지정대리인의 청구에 따라 재해보상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재해보상의 확인이라는 안 제159조의2제1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선원법 시행령」 제32조 각 호³³⁾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를 운영하는 자³⁴⁾를 자료제공 요청 대상에 포함할 필요가 있음.

참고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7조제2항³⁵⁾은 국토교통부장

여야 한다.

④ 재해보험사업자등은 선원·유족 또는 지정대리인이 재해보상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469조에도 불구하고 선박소유자를 대신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재해보상을 하여야 한다.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해보상의 청구와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3) 「선원법 시행령」

제32조(재해보상보험 등의 가입) 법 제10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 또는 공제”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선주상호보험조합이 운영하는 손해보험
2. 「보험업법」 제2조제6호 및 제8호에 따른 보험회사 및 외국보험회사가 선원의 재해보상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같은 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손해보험
3. 선박소유자 단체가 선원의 재해보상을 목적으로 「한국해운조합법」 제6조, 「수산업협동조합법」 제60조 또는 「원양산업발전법」 제28조에 따른 정관에 따라 소속 업체 등으로부터 부담금을 징수하여 운영하는 공제
4. 「민법」 제32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이 선원의 재해보상을 목적으로 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정관에 따라 소속 업체 등으로부터 부담금을 징수하여 운영하는 공제
5.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협동조합이 선원의 재해보상을 목적으로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정관에 따라 조합원으로부터 부담금을 징수하여 운영하는 공제

34) 국내 : 한국해운조합, KP&I, 현대해상, DB손해보험, KB손해보험, 삼성화재 등
해외 : GARD(노르웨이), Steamship(영국), Britannia(영국), JAPAN P&I(일본) 등

35)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7조(의무보험 가입관리전산망의 구성·운영 등)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관리청 및 유료도로관리권자, 보험회사 및 보험 관련 단체의 장에게 가입관리전산망을 구성·운영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련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관이 보험회사 및 보험 관련 단체의 장에게 가입관리전산망을 구성·운영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둘째, 안 제159조의2제1항제6호는 하위법령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하도록 구체적 위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안 제159조의2제1항제6호는 자료제공 요청 대상으로 “한국해운협회 등 그 밖에 관련되는 기관·단체의 장”을 규정하고 있는데, 자료제공 요청은 상대방에게 자료 제출 의무를 부과하는 성격이 있으므로 요청 대상 기관·단체의 범위는 가능한 한 명확하게 규정될 필요가 있음.

“한국해운협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단체의 장”과 같이 하위법령에서 구체화할 수 있도록 위임 근거를 두는 것이 수범자의 예측 가능성 측면에서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셋째, 안 제159조의2제3항에서 규정한 정보의 목적 외 사용 금지와 관련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목적’의 범위를 보다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음.

안 제159조의2제3항은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이 제공받은 자료 또는 취득한 정보를 ‘이 법에서 정하는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안만으로는 ‘이 법에서 정하는 목적’

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음.

같은 조 제1항에 따르면 자료제공 요청의 목적은 ‘이 법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의 보호, 재해보상의 확인, 선내 안전보건 기준의 확인,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입항 신고 시 승선원 명부 확인 등’으로 보이나,

제1항은 목적을 열거하면서 ‘등’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그 범위를 개방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근로조건의 보호’, ‘재해보상의 확인’ 및 ‘선내 안전보건 기준의 확인’이 각각 「선원법」의 어느 조항에 따른 업무를 의미하는지도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지 않음. 이에 따라 자료 또는 정보를 취급하는 사람이 허용되는 사용 목적의 범위를 사전에 명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울 수 있음.

개정안은 안 제159조의2제3항을 위반한 경우에 대한 별도의 벌칙을 두고 있지는 않으나, 향후 정보의 오·남용 방지를 위해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이 신설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움. 벌칙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명확성의 원칙과 수범자의 예측가능성 확보를 위하여 정보 이용 목적이 명확하게 규정될 필요가 있음.

「예술인 복지법」³⁶⁾과 같은 입법례를 참고하여 정보 이용 목적

36) 「예술인 복지법」

제15조의2(자료제공의 요청 및 전산망의 이용)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0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지원 받고 있거나 받으려는 예술인(이하 “지원대상 예술인”이라 한다)의 수급자격 또는 자격유지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관련되는 기관·단체의 장에게 지원대상 예술인 또는 그 가구원의 가족관계·주민등록·국세·지방세·토지·건물·소득·재산·출입국·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정보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전산망의 이용 또는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

을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어 보임. (참고로 이 법은 정보 누설 등에 대해 벌칙³⁷⁾을 규정하고 있음)

□ 체계·자구와 관련하여, 다음의 수정을 고려할 수 있음.

먼저 안 제15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선내 안전보건 기준”은 현행법 제79조제1항³⁸⁾의 약칭을 고려하여 “선내안전보건기준”으로 붙여 쓰는 것이 타당함.

다음으로 안 제15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은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입항 신고 시 승선원 명부 확인을 규정하고 있는데, 해당 출입항 신고가 법 제8조³⁹⁾에 따른 출입항 신고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자료의 확인을 위하여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전산망의 이용 또는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나 취득한 정보를 이 법에서 정하는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37) 「예술인 복지법」

제1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5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자료 또는 정보를 사용·제공 또는 누설한 사람
2. 제15조의3제5항을 위반하여 금융정보등을 사용·제공 또는 누설한 사람

38) 「선원법」

제79조(선내 안전·보건 및 사고예방 기준) ① 제7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선내 안전·보건 및 사고예방 기준(이하 “선내안전보건기준”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39)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출입항 신고) ① 항포구에 출입항하려는 어선의 소유자 또는 선장은 신고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수산업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관리선 사용지정을 받은 어선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어선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해역에 출어하는 경우에만 신고한다.

1. 특정해역
2. 조업자제해역

마지막으로, 안 제159조의2제1항제4호 및 제5호는 각각 「수산업협동조합법」 제4조와 「한국해운조합법」 제4조를 인용하고 있으나, 해당 조문에 조합장·중앙회장 또는 조합 회장에 관한 내용이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법상 근거는 명확하므로 여러 개의 근거조문을 나열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이해되므로 조문번호를 인용하지 않는 방식이 더 적절해 보임.

참고로, 「수산업법」 제104조제3항⁴⁰⁾은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장 및 중앙회장”이라는 방식으로 표현하고 있음.

□ 해양수산부는 선원 민원 행정 편의를 위해 정보 연계 근거를 마련하고 선원 근로 감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승선원 명부 확인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제시함.

자료제공 요청 대상 기관 등에 대한 의견조회 결과, 한국해운조

3. 관할 해양경찰서장이 치안유지나 국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
를 거쳐 지정한 해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어선법」 제5조의2제1항 단서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이 정하는 어선위치발신장치를 갖추고 이를 정상적으로 작동하여 출입항하는 어선은 제1항에 따른 출입항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최초로 신고하는 경우

2. 승선원 명부 등 어선출입항신고서의 내용에 변동이 있는 경우

3. 특정해역이나 조업자제해역에 들어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출입항 신고를 하려는 어선의 소유자 또는 선장은 신고인 인적사항, 승선원 명부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어선출입항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출입항 신고의 절차 및 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40) 「수산업법」

제104조(수산데이터베이스의 구축)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수산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장 및 중앙회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합이 민간보험사에 대한 자료제공 요청 근거를 추가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 외에는 별도의 이견이 제기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됨.

IV. 입법의 재정영향

- 국회예산정책처는 개정안에 따라 해양수산부 장관이 선원 또는 선박에 관한 자료제공 요청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항만법」 제26조에 따른 항만물류통합정보체계를 연계하여 사용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8년 8백만원 등 향후 5년간 8백만원(연평균 160만원)으로 추계된다고 분석함.⁴¹⁾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8~2032년>

(단위: 백만원)

	2028	2029	2030	2031	2032	합계	연평균
항만물류통합정보 체계 연계 (안 제159조의2제2항)	8	-	-	-	-	8	1.6

주: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해양수산부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추계한 것으로, 향후 구체적인 사업계획안이 확정된 경우 사업비는 변동될 수 있음

문 의 처

02)6788-5427

41) 국회예산정책처,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주철현의원 대표발의)」 비용추계서, 2026. 7. 22.

참고 1

개정안 관련 해사노동협약(MLC) 규정

○ (안 제61조의2제1항 관련) A2.3 제5항

5. 근로 또는 휴식 시간의 제한은 다음과 같다.
 - 가. 최대근로시간은 다음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 1) 임의의 24시간의 기간 중 14시간, 그리고
 - 2) 임의의 7일의 기간 중 72시간, 또는
 - 나. 최소휴식시간은 다음을 하회해서는 아니 된다.
 - 1) 임의의 24시간의 기간 중 10시간, 그리고
 - 2) 임의의 7일의 기간 중 77시간

○ (안 제62조제4항 관련) A2.3 제12항

12. 각 회원국은 이 기준 제5항부터 제11항까지 적합한지를 감시하기 위하여 선원의 일일 근로시간 또는 휴식시간에 관한 기록을 유지하도록 요구한다. 그 기록은 국제노동기구의 모든 이용 가능한 지침을 고려하여 권한당국이 작성한 표준화된 양식 또는 국제노동기구가 준비한 일체의 표준 양식으로 한다. 기록은 이 기준 제11항에서 요구하는 언어들로 한다. 선원은 선장이나 선장이 위임한 자 그리고 해당 선원이 서명한 자신에 관한 기록 사본 1부를 수령한다.

○ (안 제91조제1항 관련) A1.1 제1항

1. 16세 미만인 모든 사람을 선내에서 고용하거나 종사시키거나 근로를 하게 하는 것은 금지된다.

○ (안 제92조제1항 관련) A1.1 제2항, 제3항

2. 18세 미만인 선원의 야간근로는 금지된다. 이 기준의 목적상 "야간"은 국내법과 관행에 의해 정의된다. 야간은 자정 이전에 시작하여 익일 오전 5시 이후에 종료하는 최소한 9시간의 기간이 포함된다.
3. 권한당국은 다음의 경우에 야간근로의 제한을 엄격하게 준수하는 것에 대한 예외를 허용할 수 있다.
 - 가. 설정된 프로그램 및 계획에 따른 관련 선원에 대한 효과적인 훈련에 악영향을 미칠 경우, 또는
 - 나. 업무의 구체적 특성 또는 승인된 훈련프로그램이 예외가 적용되는 선원으로 하여금 야간에 업무를 수행할 것을 요구하고, 권한당국이 관련 선박소유자 및 선원 단체와 협의 후, 해당 작업이 그들의 건강 또는 안녕에 해로운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정한 경우